

제221회 정례회

2003.12.18(목)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증개정조례안

전문위원 임 석 규

## 검 토 보 고 서

□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.

□ 2003년 11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 
우리위원회에 회부된

○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 
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

○ 동 조례의 상위법인 사무관리규정(대통령령,2002.12.26개정)과  
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(행정자치부령,2003.7.14개정)이 각각  
개정됨에 따라, 변경된 사항을 동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주요골자로는

-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토록  
하며(안 제2조제5항)
-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·재등록 및 폐기한 때에는 관보나  
도보에 공고를 의무화 하고(안 제7조)
-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 할 수 있도록 공인의 인쇄내용에  
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입니다.(안 제10조)
- 기타 자세한 사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- 금번 제출된 동 개정 조례안은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·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규정과 절차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- 다만, 전자이미지공인의 전자입력 방법과 전자입력시 발생하는 서류의 폐기방법,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는 방법 및 보존기간과
-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(안 제10조)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